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구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우식

전화 053-740-4352 / 팩스 0502-193-5504

보도자료

2022. 11. 28.(월)

제목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주요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 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대구지방검찰청은 9. 28.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구성 전후로 3개월간 집중 수사하여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총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대구 지역 현직 경찰관(경위)이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동료 여성경찰관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사건을 수사하여, 11. 24. 불구속 기소하였음**
- 또한,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총 153건 법원에 청구하였고, 그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 13명에 대하여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의 잠정조치(유치처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격리하였음**
- 대구지검은 재판단계에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는,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스토킹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였음
-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I 주요 수사 사례

1.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 대구지방검찰청은 스토킹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9. 28.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스토킹사범 총 14명을 구속 기소 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대로변에서 식칼로 수십 회 찌른 스토킹 사범을 살인미수, 스토킹범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10. 24.)
- 상습 가정폭력사범을 임시조치를 통해 구치소에 유치한 후 유치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 청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10. 28.)

2.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총 153건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경찰 신청 125건, 검찰 직접 청구 28건)하였음
-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스토킹행위자 13명에 대하여는 유치장·구치소에 유치를 명하는 잠정조치(유치처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하였음
- 잠정조치 청구 시, 피해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형식의 「스토킹 피해자 면담결과서」 양식을 새로 도입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토대로 면담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음

유치처분 인용 사례

- 6년 정도 교제 후 이별한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한 1차 스토킹으로 인해 접근금지 중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흥기로 위협한 사례(9. 8.)
-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120회에 걸쳐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주를 마신 후 과도를 소주병에 꽂아놓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한 사례(9. 23.)
- 이혼한 배우자의 친정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내고 그 주변에서 스토킹한 사례(9. 30.)

3.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방지

- 대구지방법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사범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임
- 또한, 대구지방법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스토킹범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스토킹사범에 대하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여 실형을 집행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음(11. 19. 취소 확정)

II

현직 경찰관의 동료 여성경찰관 상대 스토킹 등 사건

※ 7. 18. 연합뉴스 ('대구 경찰 간부, 여경 스토킹 혐의로 입건') 등 보도 관련

1. 피고인

- 甲(남, 45세, 경위, 휴직 중)

2. 주요 공소사실 요지

- ① '19. 7. 18.경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A(여, 36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② '22. 7. 8.~17.경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B(여, 34세)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B가 112 신고를 하자 B에게 7회, B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③ '22. 7. 17. 피해자 A를 협박하여 B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하였으나 A가 응하지 않아 [강요미수]

3. 주요 수사 경과

- '22. 7. 17. B, 스토킹 피해 112 신고
- '22. 9. 19. 경찰, 불구속 송치
- ~ 11. 23. 관련자 조사, 피고인 휴대전화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
- '22. 11. 24. 대구지방법검찰청, 불구속 기소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였고,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사건 송치 후 관련자 조사, 피고인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등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어 기소하였음
-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총 2회에 걸쳐 연장함으로써 총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였음

III

향후 계획

-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등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검찰은 스토킹범죄 비롯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 대구지검 원스톱(One-Stop) 범죄피해자 지원센터(053-740-4450)에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